



2020년 상반기분(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01. 제출대상 및 제출기한

01 제출대상

 근로소득(일용 제외)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02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① 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②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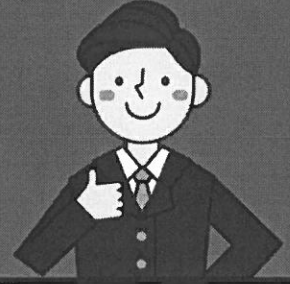
✓ 미제출 금액 × 0.5% (3개월 내 제출 시 0.25%)

✓ 불분명 또는 허위 제출금액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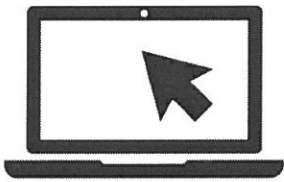




02. 제출 방법



STEP 1



홈택스 로그인



STEP 2



신청 / 제출



STEP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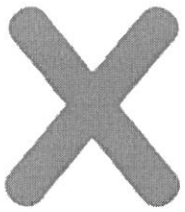
STEP 4



직접작성 제출방식
또는 변환 제출방식
선택하여 제출하기

03. 간이지급명세서 OX퀴즈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164의3)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1월 ~ 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내용

▶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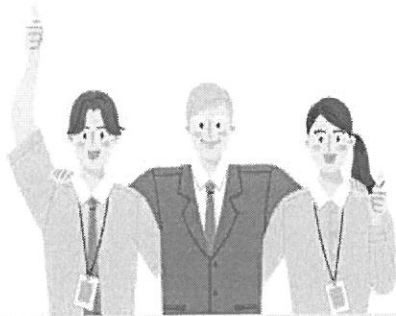
➔ 가산세(법인세법§75의7①, 소득세법 §81의11①)

▶ 미제출·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금액의 0.5%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참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A

Q 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

A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Q 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A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입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Q 3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아니요. 휴업, 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